
2024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

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

※ “2024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”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, 추후 발표되는 『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(수시모집 및 정시모집)』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2. 4.



서울교육대학교

I. 주요 변경사항

1. 전형별 모집인원 조정

(단위: 명)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	2024학년도	비고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	40	
	학생부 종합	교직원성우수자전형		100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대상자전형	5	
			농어촌학생전형	10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	19	
	장애인등대상자전형		11		
	기타	기타 특별전형	재외국민특별전형	7	
			북한이탈학생전형	3	
	소계			195	
	정시 (나군)	수능 위주	일반전형	정원 내	202*
소계				202	
합계				397	

2. 수능최저학력기준

○ 수시 모든 전형

- 국어+수학+영어+탐구(사회/과학) **4개 영역 합 9등급**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
- 단, 기회균형특별전형 I·II 및 기타특별전형은 **4개 영역 합 12등급** 이내, 한국사 동일

○ 정시 수능위주(일반전형)

- 국어, 수학, 탐구(사회/과학) 영역의 평가와 별개로 **영어 3등급, 한국사 4등급 이내**

3. 전형요소별 배점 및 전형단계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전형요소 반영률 및 전형단계	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1단계(2배수): 학생부교과 성적 100% 2단계(1배수): 교과 성적 80%+면접평가 20%	
	학생부 종합	교직원성우수자전형		1단계(2배수): 서류평가 100% (학교생활기록부) 2단계(1배수): 서류평가 50%+면접평가 50%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대상자전형	
			농어촌학생전형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	
			장애인등대상자전형	
	기타	기타 특별전형	재외국민특별전형	일괄합산: 면접평가 100%
북한이탈학생전형				
정시 (내군)	수능 위주	일반전형	1단계(2배수): 수능성적 100% 2단계(1배수): 수능성적 80%+면접평가 20%	

II. 수능최저학력기준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수능최저학력기준	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) 4개 영역의 합이 9등급 이내 ※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, 제2외국어/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	
		교직원성우수자전형		
	학생부 종합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 대상자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) 4개 영역의 합이 12등급 이내 ※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, 제2외국어/한문은 반영하지 않음
			농어촌 학생전형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	
	장애인등 대상자전형			
	기타	기타 특별전형	재외국민 특별전형	
북한이탈 학생전형				
정시 (나)군	수능 위주	일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능반영영역- 국어 수학 탐구(사회/과학) (제2외국어 한문은 미반영) ■ 최저학력기준- 영어 3등급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 	

Ⅲ. 지원자격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수능최저학력기준	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2024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나.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※ 추천 인원은 고교별 재적인원 기준 3% 이내 (고3 재적인원 * 0.03,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)	
		교직원성우수자전형	-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	
	학생부 종합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 대상자전형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의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			농어촌 학생전형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서 중·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 동안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거주한 자 (사망, 이혼,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부 또는 모만 기준으로 함) ※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·면 소재 학교이어야 함(동일 읍·면이 아니라도 가능함) ※ 부모·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·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※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재학 당시 읍·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·면으로 인정함 ※ 농·어촌소재 특수목적고(과학고, 영재고, 국제고, 외국어고, 예술·체육계열 고등학교 등)는 지원할 수 없음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			장애인등 대상자전형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

	기타	기타 특별전형	재외국민 특별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·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(예정자 포함)한 재외국민 ※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·중·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수학 연한과 관계없이 인정 ※ 전학 등의 사유로 재학 기간이 12년에서 1학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 인정
			북한이탈 학생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
정시 (나)군	수능 위주	일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	